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01.13. IBK 퇴직연금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B3365]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3 5 6 매우 다소 보통 낮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높은 위험 위험 낮은 위험 위험 위험

IBK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해외 주식의 가격하락위험,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해외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IBK 퇴직연금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mark>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mark>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관련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90%이상을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된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이익이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비교지수] S&P Global Luxury Index 90%+Call Ioan 10%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s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투자전략

가. 기본 운용 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을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IB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자산의 60%이상을 럭셔리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 상장예정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DR)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프로세스>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Step 1 정보수집

■ 거시경제 분석

- 글로벌 경기 분석
- 주요국 정책 변화
- 금융시장 모니터링

■ 산업분석

- 럭셔리 산업분석
- 소비재 산업분석

■ 광범위한 자료 수집

- 연구소, 증권사 Research
- 컨설팅기관, 기업공시자료.

▶ Step 2 투자유니버스

■ 투자 유니버스 선정

- 럭셔리 관련 인덱스(S&P, MSCI)
- 브랜드 순위 발표기관 자료
- 럭셔리 산업 노출 정도

■ 기업분석

- 브랜드 가치
- 가격결정력
- 경영전략
- 밸류에이션
- 턴어라운드, M&A

▶ Step 3 <u>포트</u>폴리오 구축

■ 핵심포트폴리오

- 30 ~ 50개 내외
- 편입 유효성 점검
 - 기업 모니터링

■ 리밸런싱

- 목표주가
- 비중조절
- 종목교체

■ 투자 가이드라인 준수

- 법률 및 투자가이드라인 숙지

※ 상기의 프로세스는 실제 운용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목 선정>

브랜드 파워

-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가격차별화
- 글로벌 유통망 확보
- 글로벌 소비자의 인지도 확보

매출다변화

■ "중장기 투자"를 전제로 상품 포트폴리오 및 글로벌 매출 다변화를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량기업

성장기업

■ 매출액 및 기업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 기업 발굴

<포트폴리오 구성>

- 강력한 브랜드 가치 및 펀더멘털을 보유한 산업별 대표주로 핵심 포트폴리오 구성
- 산업별 및 종목별 비중 조절을 통한 초과수익 확보
- 전략 포트폴리오를 통한 초과수익 확보

구 분	비중	내 용
핵심 포트폴리오	~80% 이내	■ 벤치마크(BM)를 추종하는 가운데 ■ 시황변동에 따라 벤치마크 대비 산업별 /종목별 비중 조절(수시)
전략 포트폴리오	~20% 이내	브랜드 인지도 확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발굴 목표주가설정, 종목교체, 비중 조절(수시)

※상기 운용전략은 참고자료로서, 실제 운용시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클래스 종류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해외60주식형)	총 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460	0.600	1.8500	1.4905	<u>157</u>	318	486	838	<u>1,830</u>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1.160	0.300	1.4600	1.1905	<u>125</u>	255	389	674	1,484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	-----------	-------	-------	-------	-------



수익률)					04.44	22.04.4.4	22.0		20.04.4.4		
,					.01.14	23.01.14 ~ 25.01.13		1.14	20.01.14		
	πŀnU	판매수수료		~ 2	~ 25.01.13		~ 25	.01.13	~ 25.01.13		
		Iㅜㅜ표 구(C)(%		21	9.51	2.64	<u>-2</u>	.91_	6.90	<u>7.14</u>	
	비교	지수(%	-		0.52	0.06	-4	.41_	6.24	7.00	
	수익률	변동성	-	_1	5.08	15.24	19	.40	22.62	19.05	
		지수: S8 디 않음)	kP Global Luxur	y Index 90%	6+Call loan	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어	부과되는 보수	: 및 비용이 반영	
	(주2)연평	균 수익	률은 해당 기간동			균방식으로 계	산한 것으로	집합투자	기구 총비용 지급	l후 해당기간	
			평균 수익률을 성(표준편차)은			·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	률에서 통	상적으로 얼마	만큼 등락했는지	
	를 보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	성이 높을	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하		·실위험이 ·투자기구		의미합니다.	
	иы		TIO	운용	용현황	연평균	ㅎㅎ 합합 수익률(하			운용	
	성명	생년	직위	집합투자	운용규모	운용		_	용사	- O 경력년수	
				기구 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운용전문	신준형	1975	책임(이사)	32개	6,105억운		12.82	20.09		17년 2개월	
인력			탁의 운용은 해S 임을 부담하는				력'은 이 십	l압두사기-	구의 운용의사실	결정 및 운용결과	
				·B이는 문용년문년국을 피키합되다. 퇴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 [(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경	종집합투	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혀	해당 집합투기	다업자가 분류				균운용성과이며, 해	
			문인력의 평균운 수'는 해당 운용							ł.	
	· 집합	투자증	권은 「예금자	·보호법」0	∥ 따라 <u>보</u>	호되지 않는	- 실적배			의 손실이 발	
			으므로 투자(–		ᇩᇬ	aki ali Li a	조괴이 기비르	
		-					{아나는 :	것을 인정	5여기나 그	증권의 가치를	
							설명서의 .	교부를 5	요청하시면 ·	귀하의 집합투	
	-	-					-	N L I I	U-71 FL A O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지하트자즈권이 경우 효력발생인 이호에도 변경된 스 이스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요락필정될 이후에도 연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										
ㅠㅋ작용	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										
	다며 소규모핀드 애당어부는 금융투자업회, 판매회자, 자산운용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니다.										
				신탁은 투	투자 원리금	구 전액이 년	보장 또는	- 보호되	지 않습니디	나. 따라서 투	
주요투자 이허			자원본의	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의 결정과 투	
	원본손실우	실위함	רי								
110											
	LITIO	1±1 D'				-					
	시상위 개별위			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			ᆸᅴᅱ 무상황 달							
투자자 유의사항 주요투자 위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해외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무자인식의 모두자인식은 구도 외와표시 해외증권에 무자하므로 원률인증 및 시간차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 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되는 기초자산의 통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통화에 대하여 환헷지를 수행함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환율변동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위 탁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자산과 관련된 운용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 자업자에게 위탁하였으나, 2017년 3월 10일부터 IBK자산운용의 직접운용 방식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 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 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 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자금을 납입한 에 공고되는 기준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D+2)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 생각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 (D+3) 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수수료		들 중세인 후 완매내금을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²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고니자소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ibk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합				
	공시장소	· · · · · · · · · · · · · · · · · · ·			
	공시장소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구 분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u> 입니다.			
	구 분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집합투자기구에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 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법에 따라 세금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 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집합투자기구에 법에 따라 세금 ①세액공제: 근5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 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			
과세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집합투자기구에 법에 따라 세금: ①세액공제: 근로 좌에 납입한 금역 지방소득세 포함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 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함) 세액 공제			
과세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법에 따라 세금: ①세액공제: 근로 좌에 납입한 금역 지방소득세 포함 단, 퇴직연금계좌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 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남) 세액 공제 새엑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과세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집합투자기구에 법에 따라 세금: ①세액공제: 근로 좌에 납입한 금인 지방소득세 포함 단, 퇴직연금계좌 ②과세 이연: 투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 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세액 공제 새엑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			
과세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집합투자기구에 법에 따라 세금: ①세액공제: 근료 좌에 납입한 금(지방소득세 포함 단, 퇴직연금계좌 ②과세 이연: 투 고, 연금 수령 사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 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세액 공제 새엑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과세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집합투자기구에서 합에 따라 세금을 1세액공제: 근로 조에 납입한 금역 지방소득세 포함 단, 퇴직연금계좌 2과세 이연: 투고, 연금 수령 사 ③연금 인출 방다르게 결정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 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세액 공제 새엑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과세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법에 따라 세금 : 그 :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 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함) 세액 공제 새엑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식에 따른 과세: 연금인출, 연금 외 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등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			
과세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법에 따라 세금 : 그 :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 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함) 세액 공제 새엑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식에 따른 과세: 연금인출, 연금 외 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등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집합투자기구에서 합에 따라 세금을 (1) 세액공제: 근로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 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세액 공제 새엑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식에 따른 과세: 연금인출, 연금 외 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등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단의 구요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퇴직연금제도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법에 따라 세금을 (1) 세액공제: 근로 좌에 납입한 금을 지방소득세 포함 단, 퇴직연금계좌 (2) 과세 이연: 투고, 연금 수령 사 (3) 연금 인출 방다르게 결정 (2) 상기의 투자소지위 등에 따라 영향에 대하여투자설명서 "제2를 IBK자산운용㈜ (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세제 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함) 세액 공제 새엑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식에 따른 과세: 연금인출, 연금 외 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등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식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효력발생일	2025년 2월 6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u>www.ibkasset.com</u>),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 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C)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자나 근로자가 가입가능하며,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판매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펀드 등 (f)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에서 매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